기 안 용 지

(전화 : 713 - 6156)

시행상 특별취급	

분류기호 문서번호	법무 02124 -
보존기간	영구 · 준영구 10. 5. 3. 1.
수신처 보존기간	영 구
시행일자	1990. 4. .
보조기관: 부시장	전 결
보조기관: 기획관리실장	
보조기관: 법무담당관	
기안책임자	법제계장

시 장

결재 1990. 4. 28 부시장

협조기관

시통제 검열 1990. 4. 28 통제관

발송일

경유 수신 참조	기 안 참 조
발신명의	

제 목	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(안)

발 령

(제 1 안)

수 신 : 내부결재

제 목 : 같은 건

1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 39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 부 : 발령안 1 부.

(제 2 안)

수 신 : 공보관

1505 - 25(2 - 1) 일(1)갑
'85. 9. 9. 승인

190mm × 268mm 인쇄용지 2 급 60g /㎡
가 40 - 41 1986. 4. 8.

제 목 : 시보 게재

1. 별첨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을 시보에 게재 발행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00 호 1부. 끝.

(제 3 안)

수 신 : 총무과장

제 목 : 훈령 발행

1. 총무02125-328 (90. 4. 17.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 을 시보에 게재 발행하였으니 시행에 착오없도록 할 것.

첨 부 : 서울특별시 훈령 제 700 호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0년 4월 28일

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

무시

4 -3

서울특별시 훈령 제 200 호

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개정규정

서울특별시청원경찰징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② 위원장은 내무국장,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과장, 도로시설과장, 녹지과장, 비상계획과장, 상수도사업본부 총무부장이 된다.

제1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장은 재무국장, 부위원장은 국민운동지원과장, 위원은 법무담당관, 세정과장, 시민생활과장, 민방위과장이 된다.

부 칙

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